창업교육센터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창업교육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업무)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대학 전체 또는 단과대학, 전공별로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통합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대학 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
 - 4. 대학 내 관계 부서와의 협력·연계에 관한 사항
 - 5. 대학 내 학생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, 및 연구 활동의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6. 창업동아리 운영에 관한 업무
 - 7. 대학과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 - 8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- 제3조(조직)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 -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- 제4조(운영위원회) ①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 -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 - ③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.
 - ④위원회 위원 중 인재개발원장과 창업교육센터장은 당연직으로 구성한다.
 -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.
 - ⑥위원회 위원장은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.
- 제5조(위원회업무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도별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·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센터의 창업교육 관련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
 - 4.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창업교육 활용에 관한 사항
 - 5. 창업교육 수요조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6. 기타 창업교육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<u>부 칙</u>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